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7호 2010. 4. 20(화)

포항시보

- 시장지시사항..... 2
- ◀ 조 려 ▶
-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91호) 6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92호) 11
-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93호) 36
-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제994호) 42
-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995호)..... 43
-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96호) 55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97호) 60
-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98호) 100
- ◀ 규 칙 ▶
-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524호) 104
-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31호) 108
- ◀ 고 시 ▶
-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좌표 성과 고시(제2010-2호) 120
- 지적측량기준(삼각)점 성과고시(제2010-11호) 121
- ◀ 공 고 ▶
- 도로지정(변경) 공고(제 2010-104호) 122

회 람									
--------	--	--	--	--	--	--	--	--	--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4. 19(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순국 장병 애도 및 공직복무기강 확립 철저. - 순직장병 애도 분위기 속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특히 음주, 가무 등을 자제하기 바람. ○ 포항일자리종합센터 내실있는 운영 및 성과거양 바람. - 각 부서는 경제노동과와 협의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바라며, - 일자리 종합센터가 구직을 위한 통로가 되도록 공격적·능동적인 활동으로 실적(성과)이 나오도록 추진 바람. ○ 청사 에너지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강화할 것. ○ 숙박업소 물비누 사용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추진 상황을 보고 바람. ○ 공무원 선거중립 철저 및 관권선거를 일소하고 모범 선거가 되도록 바람. ○ 인천에서 개최되는 백남준 전 확인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를 검토 바람. 	<p>전 부 서</p> <p>경제노동과 전 부 서</p> <p>녹색성장팀 재정관리과</p> <p>환경위생과</p> <p>자치행정과 전 부 서</p> <p>시립미술관</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4.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25 참전비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할 것. ○ 당진 현대제철소와 포스코의 원재료(철광석 등) 야적방 법을 달리하는데 견학하여 포스코측에서 환경개선이 되 도록 검토 추진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 현대제철소의 철광석 건물 내 관리시스템을 현 장 견학하여 포스코측도 이를 도입하여 대기오염 방 지 및 시민들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검토 추진 바람. ○ 국유지 및 사유지(송도, 청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상 필요한 T/F팀 구성도 검토하기 바람, 특히 송도, 청림동 일원에 대해서는 철조망을 쳐서 통제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독거노인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읍면동 실태를 파 악하기 바람. ○ 말은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연찬을 강화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농가가 어려워 현장방문 격려 등이 필요한데 누 군가 이를 시장께 추진토록 얘기하는 사람이 없음. 타시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좋은 시책·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 포항 막걸리 '영일만 친구' 출시를 수요회 등 각종 행 사시에 홍보하고,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대 적으로 홍보 추진 바람. ○ 포스코로 인도와 건물사이 공간에 나무식재 및 녹지 조 성하기 바람. 	<p>저출산고령화 대책과</p> <p>환경위생과</p> <p>재정관리과</p> <p>저출산고령화 대책과</p> <p>전 부 서</p> <p>농축산과</p> <p>도시녹지과</p>

부시장 지시사항
 - 2010. 4. 19(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4.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도 위판장 건립 조속히 추진 바라며, 주차장 건립 전 까지 주차근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천안함 추모 현수막 추가 게재하기 바람. ○ 도민체전 대비하여 경남도민체전(양산시) 벤치마킹 실시 하도록 하고, 숙박업소 물비누 사용 적극 추진 및 숙박 료를 통일해서 적용되도록 추진 바람. ○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비상근무 철저. 	<p>교통행정과</p> <p>남북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p> <p>전 부 서 환경위생과</p> <p>도시녹지과 남·북구청 읍 면 동</p>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조례 제 991호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함
2.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함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함

- 4. “사회서비스” 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함
- 5. “연계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함

제3조(위원회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 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 2. 위촉직 위원 : 포항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준용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 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협력사항
-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용자를 알선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해당분야 전문기술 및 지식 제공을 촉진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 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업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16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등을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포항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
- 나. 사회적기업등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
(안 제11조)
- 다.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18조 및 제19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박승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조례 제 992호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세
- 2. 지방소득세
- 3. 재산세
- 4. 자동차세
- 5. 주행세
- 6. 담배소비세
- 7. 도축세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우편 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균등할” 을 “균등분” 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 를 “사업소” 로, “사업장을” 을 “사업소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균등할” 을 “균등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 을 “사업소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세율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 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0조의2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 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1조제1항 중 “법인세할” 을 “법인세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할” 을 “법인세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인세할·소득세할” 을 “법인세분·소득세분” 으로, “법인세할” 을 “법인세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할” 을 “법인세분” 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를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그 다음달 말일까지” 를 “다음 달 15일까지” 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세율) ①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2장 제4절 농업소득세를 삭제한다.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장 제2절 사업소세를 삭제한다.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p> <p>②보통세는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p>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사업소세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p>③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u>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51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u>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납세의무자) ① <u>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② <u>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u></p>	<p>제18조(납세의무자) ① <u>균등분-----</u> ----- ----- ----- ----- 사업소 ----- ----- ----- ----- ----- 사업소 ----- ----- 사업소를 ----- -----</p> <p>② <u>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u>균등할은</u>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p>	<p>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p> <p>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u>균등분</u>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p> <p>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세율) ① <u>균등할</u>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 가. (생 략) 나. 시내에 <u>사업장을</u>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p> <p>2. <u>법인</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구</th> <th style="width: 30%;">분</th> <th style="width: 40%;">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 colspan="2">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0원</td> </tr> <tr> <td colspan="2">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200,000원	<p>준일로 하고 <u>납세의무자는</u> <u>납부할</u>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u>납기로 하여</u> <u>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u>야 한다.</p> <p>제20조(세율) ① <u>균등분</u>----- -----.</p> <p>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u>사업소를</u>----- -----</p> <p>2. <u>법인</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구</th> <th style="width: 30%;">분</th> <th style="width: 40%;">세 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 colspan="2">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0원</td> </tr> <tr> <td colspan="2">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200,000원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000원</td> </tr> <tr> <td>기타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소득세 할 법인세 할 농업소득세할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구 분	세 율	소득세 할 법인세 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000원</td> </tr> <tr> <td>그 밖의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able> <p style="margin-top: 20px;">②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 style="margin-top: 20px;">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 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구 분	세 율												
소득세 할 법인세 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현 행		개 정 안	
<p><과세표준> <세율></p> <p>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p> <p>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p> <p>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p> <p>4. ~ 5.(생 략)</p> <p>제04절 농 업 소 득 세</p> <p>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p>	<p><과세표준> <세율></p> <p>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p> <p>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p> <p>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p> <p>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p> <p>4. ~ 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u>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u>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 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p>	<p>(삭제)</p>

현행	개정안
<p>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p> <p>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 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 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 오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0"> <tr> <td>〈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td> </tr> <tr> <td>400만원 초과</td> <td>12만원 + 400만원 초과</td> </tr> <tr> <td>1천만원 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1천만원 초과</td> <td>72만원 + 1천만원 초과</td> </tr> <tr> <td>4천만원 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4천만원 초과</td> <td>672만원 + 4천만원 초과</td> </tr> <tr> <td>8천만원 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30</td> </tr> <tr> <td>8천만원 초과</td> <td>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td> </tr> <tr> <td></td> <td>금액의 100분의 40</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72만원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672만원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p>(삭제)</p>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72만원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672만원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p>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p> <p>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경사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향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삭 제)</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 할 수 있다.</p> <p>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02절 사 업 소 세</p>	<p>(삭 제)</p>
<p>제95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p> <p>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p> <p>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p> <p>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p> <p>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p> <p>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p> <p>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제98조(납기)</u>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p><u>제99조(신고의무)</u>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p>(삭제)</p>

현행	개정안
<p><u>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u>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유자의 주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u> 2.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 3. <u>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4.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5. <u>비과세 및 감면사유</u> 6. <u>기타 필요한 사항</u> 	<p>(삭제)</p>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재편성하며,
-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의 폐지를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재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안 제3조)
-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안 제18조 외)
- 다. 우편송달의 경우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 라. 과표구간별 세율이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율의 조정 등 지방세법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27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조례 제 993호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

현 행	개 정 안
<p><u>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2. ~ 3. (생략)</p> <p><u><신설></u></p>	<p><u>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u>제16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u></p>

1.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수정내용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이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과 중복 된다는 이유로 2009.12.29(조례 제973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 하고자 조례에서 도시계획세의 감면사항을 다시 규정함.(안 제13조)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 등록에 한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12.31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6조의2)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조례 제 994호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지이유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09.11.28)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삭제되어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조례 제 995호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함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 하는 농기계를 말함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함
4. “사용자”라 함은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함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 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 또는 담당요원을 배치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한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2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5시)까지로 한다.

제9조(임대료 결정 및 사전납부) ①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받아 접수입 통장에 입금 후 10일 간격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운반이 곤란한 콩 정선기 및 구입 가격 오십만 원 이하는 무상임대)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진다.

④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한 후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1. 1차 : 사용정지 3개월
- 2. 2차 : 사용정지 6개월
- 3. 3차 : 3차 위반 또는 사용자가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영구 사용정지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 1.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 2.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3.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4.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 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포항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원/1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대료	비고
콩 정선기(고정설치), 구입가격 50만원 미만	무상	
100만원미만	5,000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50,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60,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70,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80,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90,000	
5,000만원 이상 ~	100,000	

※ 비고

1. 농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추가 구입 전의 기종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처리기간 1일
임대인		임차인		
포항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수량	
			수량	
임대차기간	년 월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금			
농기계 사용계획	기계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m ²)		
사용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p>「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p> <p>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임차인 : (서명 또는 인)</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제정이유

포항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의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 나. 농기계 임대계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조례 제 996호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 5.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 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 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3.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지원사업내용, 대상범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조례 제 997호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 부터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제25조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⑤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의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5와 같다.

제4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를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를 “전체위원의 3분의2” 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출석으로” 를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로 한다.

부칙 제8조제1항 중 “별표 26” 을 “별표 18”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0퍼센트 및 80퍼센트” 를 “20퍼센트 및 80퍼센트” 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23까지 및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16조관련)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첩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첩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별표 2】 <개정 2007.1.16>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7.1.16>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7.1.16, 2008.8.19>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6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제외하고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삭제2008.8.19>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개정 2007.1.16, 2008.8.1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7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개정 2007.1.16, 2008.8.1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8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 하고, 시내버스타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07.1.16, 2008.8.1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9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탁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 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개정 2007.1.16, 2008.8.19>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0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삭제 2008.8.19>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개정 2007.1.16, 2008.8.19>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1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7.1.16, 2008.8.19>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2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3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며, 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고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개정 2007.1.16, 2008.8.19>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개정 2007.1.16, 2008.8.19>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 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일반 음식점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개정 2004.7.27, 2007.1.16, 2008.8.19>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당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단, 기존 허가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이하에 의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07.1.16, 2008.8.19>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7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5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삭제 2008. 4. 8>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07.1.16, 2008.8.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8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 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04.7.27, 2007.1.16, 2008.8.19, 2009.5.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9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8.4.8>

(1) 별표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 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 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개정 2008.4.8>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8.4.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8.4.8>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8.4.8>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08.4.8>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8.4.8>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8.4.8>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 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단, 기존 허가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이하에 의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개정 2007.1.16, 2008.8.1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신설 2008.4.8>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사.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단, 농업용 시설에 한한다)<신설 2008.4.8>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개정 2007.1.1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1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공원·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같은 호 가목에 대하여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신설 2008.4.8>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8.4.8>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8.4.8>

【별표 23】 <개정 2007.1.1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44조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 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 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 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생략)</p> <p>2.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신 설></u></p> <p>3.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신 설></u></p>	<p>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p> <p>4. (현행과 같음)</p> <p><u>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u></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p> <p>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④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p> <p>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p> <p>⑤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p> <p>⑥</p> <p>.....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p> <p>.....</p> <p>.....</p>

현 행	개 정
<p><u>〈신 설〉</u></p> <p><u>〈신 설〉</u></p> <p>제4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단,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에 한한다)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5와 같다.</p> <p>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p>	<p>⑦ 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의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p> <p>제44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5와 같다.</p> <p>제46조(구성 및 운영) ①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체위원의 3분의</p>

현 행	개 정
<p>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⑤ (생략)</p>	<p>2</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8조(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8조(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p>
<p>③ (생략)</p> <p>부칙 제8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p> <p>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다.</p> <p>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부칙 제8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p> <p>① 별표 18.....</p> <p>②20퍼센트 및 80퍼센트</p> <p>③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농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의 개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중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 시 까지 유예된 일부 용도지역 내 공장입지 허용, 건폐율 완화, 용도변경 특례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완화하고자 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3조, 제84조, 제93조, 제111조, 제112조 및 별표2부터 별표23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안 13조, 25조, 43조의2, 44조, 46조, 48조, 부칙8조, 별표1부터 별표25까지)
- 나. 「농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안 제25조, 별표1, 별표4, 별표16, 별표19)
- 다. 「수질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별표4, 별표16, 별표19)
- 라.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안 제19조의2)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조례 제 998호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 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 2인” 을 “의원 2명”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간사 1인” 을 “간사 1명”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4항에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를 신설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u>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시의회 의원 <u>2인</u> 3. (생략) <p>② (생략)</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간사는 <u>재난관리담당 과장</u>이 된다.</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 의원 <u>2명</u> 3.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u>1명</u>을 두되,.....</p> <p>.....</p>

제4조(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

제4조(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
.....

<p>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p>	<p>.....</p> <p>제11조(수당)</p> <p>.....</p> <p>..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p> <p>제14조(운영규정)</p> <p>.....</p> <p>... 해당</p>
--	--

- 1. 개정이유**
- 지역 축제의 부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 시달 등 안전대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계획을 검토·심의토록 함.
-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주관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포항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안 제7조)
 - 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규 칙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27일

포항시 규칙 제 524 호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

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 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종 슈퍼마켓은 165제곱미터 편의점등은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아. 기타장소: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이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 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

4. 제1호 아목의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 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 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 ④ 제3조의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제3조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1호 라목의 건축물 1층에 있는 소매인 신청 점포의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우 및 바목의 소매인과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기간은 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1.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와 소매인 지정의 부적당한 장소, 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4조)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규칙 제 531호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총 계		1,960	607	37	170	291	324	151	169	211
정 무 직 계		1	1	-	-	-	-	-	-	-
지방정무직		1	1	-	-	-	-	-	-	-
별 정 직 계		26	1	-	24	1	-	-	-	-
6급상당 소 계		24	1	-	23	-	-	-	-	-
지방별정직 6급 (비서)		1	1	-	-	-	-	-	-	-
지방별정직 6급 (보건진료원)		23	-	-	23	-	-	-	-	-
7급상당 소 계		2	-	-	1	1	-	-	-	-
지방별정직 7급 (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	-
지방별정직 7급 (여성교육강사)		1	-	-	-	1	-	-	-	-
연 구 직 계		4	1	-	-	3	-	-	-	-
지방학예연구사		1	1	-	-	-	-	-	-	-
지방보건연구사		1	-	-	-	1	-	-	-	-
지방환경연구사		2	-	-	-	2	-	-	-	-
지 도 직 계		40	-	-	40	-	-	-	-	-
지 도 관 소 계		3	-	-	3	-	-	-	-	-
지방농촌지도관		2	-	-	2	-	-	-	-	-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1	-	-	1	-	-	-	-	-
지 도 사 소 계		37	-	-	37	-	-	-	-	-
지방농촌지도사		33	-	-	33	-	-	-	-	-
지방생활지도사		4	-	-	4	-	-	-	-	-
일 반 직 계		1,555	486	24	97	177	268	134	158	211
2 급 소 계		1	1	-	-	-	-	-	-	-

직렬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이사관	1	1	-	-	-	-	-	-	-
4 급 소 계	12	5	1	2	2	2	-	-	-
지방서기관	1	-	1	-	-	-	-	-	-
지방기술서기관	2	-	-	2	-	-	-	-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9	5	-	-	2	2	-	-	-
5 급 소 계	96	32	4	4	15	12	4	10	15
지방행정사무관	10	4	3	-	1	2	-	-	-
지방시설사무관	4	2	-	-	2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3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9	11	1	-	3	4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	1	1	-	-	-	-	-	-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1	-	-	-	2	-	-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1	-	-	-	-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7	3	-	-	2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3	-	-	-	1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	-	-	-	-	-	-	3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6	-	-	-	1	2	-	3	-

직렬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1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6	3	-	-	-	-	-	1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	-	-	-	-	-	-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4	-	-	-	-	2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	-	-	-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	-	2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	-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	-	-	-	-	-	-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1	-	-	-	-	-	-	1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	-	2	-	-	-	-	-
6 급 소 계	426	160	6	17	52	76	38	47	30
지방행정주사	136	67	4	-	19	24	-	-	22
지방세무주사	8	-	-	-	-	8	-	-	-
지방사회복지주사	4	2	-	-	-	-	2	-	-
지방전산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11	4	-	-	7	-	-	-	-
지방농업주사	4	2	-	-	-	2	-	-	-
지방녹지주사	6	2	-	-	-	4	-	-	-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보건주사		1	1	-	-	-	-	-	-	-
지방의료기술주사		1	-	-	1	-	-	-	-	-
지방시설주사		47	20	-	-	9	14	4	-	-
지방통신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22	4	-	-	1	4	4	9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30	7	-	-	1	2	2	10	8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2	2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5	-	-	-	5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9	8	-	-	1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30	2	-	-	1	-	7	20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3	3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15	-	-	2	1	4	7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6	2	-	-	-	4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4	13	1	-	1	4	4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통신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	2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3	-	-	-	3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4	3	-	-	1	-	-	-	-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4	-	-	-	-	4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4	3	-	-	1	-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4	2	-	-	-	2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10	-	-	10	-	-	-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2	-	-	2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4	-	-	-	-	3	1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1	-	-	-	-	-	1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6	-	-	-	-	2	4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3	-	-	-	-	3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	-	-	1	-	-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2	-	-	2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	1	-	-	-	-	-	-
7 급 소 계		459	163	8	32	60	92	32	37	35
지방행정주사보		150	63	6	2	18	26	10	-	25
지방세무주사보		29	3	-	-	1	10	5	8	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6	6	-	-	1	6	3	4	6
지방전산주사보		1	1	-	-	-	-	-	-	-
지방사서주사보		1	-	-	-	1	-	-	-	-
지방공업주사보		26	13	-	-	13	-	-	-	-
지방농업주사보		4	2	-	-	-	2	-	-	-
지방복지주사보		7	3	-	-	-	4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9	5	-	-	-	-	-	4	-
지방보건주사보		10	1	1	6	-	2	-	-	-
지방식품위생주사보		7	1	-	-	-	6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의료기술주사보		6	-	-	6	-	-	-	-	-
지방간호주사보		12	-	-	12	-	-	-	-	-
지방환경주사보		9	8	-	-	1	-	-	-	-
지방시설주사보		68	28	1	-	11	22	3	3	-
지방통신주사보		3	1	-	-	-	2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전산주사보		6	5	-	-	1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사서주사보		2	-	-	-	2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공업주사보		3	-	-	-	3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농업주사보		33	1	-	-	3	2	9	18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보건주사보		5	1	-	-	-	2	2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2	7	-	-	1	2	-	-	2
지방전산주사보 또는 지방공업주사보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9	5	-	-	2	2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2	2	-	-	-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보건주사보		2	1	-	-	1	-	-	-	-
지방환경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	-	-	1	-	-	-	-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지방복지주사보		2	-	-	-	-	2	-	-	-
지방복지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지방수의주사보		5	3	-	-	-	2	-	-	-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지방간호주사보		6	-	-	6	-	-	-	-	-
8 급 소 계		363	96	5	37	36	54	37	30	68
지방행정서기		124	25	3	-	4	20	12	10	50
지방세무서기		26	1	-	-	1	6	4	2	12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사회복지서기		19	2	-	-	1	4	2	4	6
지방전산서기		4	3	-	-	1	-	-	-	-
지방사서서기		2	-	-	-	2	-	-	-	-
지방공업서기		20	6	-	-	12	2	-	-	-
지방농업서기		4	2	-	-	-	-	1	1	-
지방복지서기		6	4	-	-	-	2	-	-	-
지방해양수산서기		5	2	-	-	-	-	2	1	-
지방보건서기		20	-	-	16	-	4	-	-	-
지방의료기술서기		10	-	-	10	-	-	-	-	-
지방간호서기		2	-	-	1	1	-	-	-	-
지방환경서기		3	3	-	-	-	-	-	-	-
지방시설서기		58	30	-	-	8	12	5	3	-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전산서기		7	5	2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공업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농업서기		15	2	-	-	-	2	9	2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복지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해양수산서기		1	-	-	-	-	-	-	1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보건서기		9	-	-	-	1	-	2	6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환경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2	1	-	-	1	-	-	-	-
지방전산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1	-	-	-	1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2	2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환경서기		4	1	-	-	3	-	-	-	-
지방농업서기 또는 지방수의서기		3	1	-	-	-	2	-	-	-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의료기술서기		2	-	-	2	-	-	-	-	-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간호서기		8	-	-	8	-	-	-	-	-
9 급 소 계		198	29	-	5	12	32	23	34	63
지방행정서기보		62	14	-	-	5	-	8	10	25
지방세무서기보		32	-	-	-	-	12	6	8	6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3	2	-	-	-	2	5	4	30
지방전산서기보		2	2	-	-	-	-	-	-	-
지방공업서기보		1	-	-	-	1	-	-	-	-
지방농업서기보		7	-	-	-	-	-	2	5	-
지방복지서기보		4	1	-	-	1	2	-	-	-
지방보건서기보		9	-	-	5	-	4	-	-	-
지방환경서기보		2	-	-	-	-	2	-	-	-
지방시설서기보		19	5	-	-	3	6	-	5	-
지방통신서기보		3	3	-	-	-	-	-	-	-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	-	-	-	-	-	2	-	2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전산서기보		3	2	-	-	1	-	-	-	-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시설서기보		5	-	-	-	1	2	-	2	-
지방농업서기보 또는 지방수의서기보		2	-	-	-	-	2	-	-	-
기능 직 계		334	118	13	9	110	56	17	11	-
기능 6 급 소 계		13	6	-	-	7	-	-	-	-
6급 지방전기장		3	-	-	-	3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6급 지방기계장		3	-	-	-	3	-	-	-	-
6급 지방운전장		3	3	-	-	-	-	-	-	-
6급 지방선박항해장		1	1	-	-	-	-	-	-	-
6급 지방사무실무장		3	2	-	-	1	-	-	-	-
기능 7 급 소 계		43	26	-	-	12	4	1	-	-
7급 지방통신장		1	-	-	-	1	-	-	-	-
7급 지방전기장		4	1	-	-	3	-	-	-	-
7급 지방기계장		15	4	-	-	8	2	1	-	-
7급 지방운전장		7	7	-	-	-	-	-	-	-
7급 지방화공장		1	1	-	-	-	-	-	-	-
7급 지방선박항해장		2	2	-	-	-	-	-	-	-
7급 지방사무실무장		13	11	-	-	-	2	-	-	-
기능 8 급 소 계		60	34	1	1	17	6	1	-	-
8급 지방건축원		3	1	-	-	-	2	-	-	-
8급 지방통신원		2	2	-	-	-	-	-	-	-
8급 지방전기원		4	-	-	-	4	-	-	-	-
8급 지방기계원		18	7	-	-	11	-	-	-	-
8급 지방열관리원		2	1	-	1	-	-	-	-	-
8급 지방운전원		15	9	-	-	1	4	1	-	-
8급 지방화공원		1	-	-	-	1	-	-	-	-
8급 지방선박기관원		1	1	-	-	-	-	-	-	-
8급 지방농림원		1	1	-	-	-	-	-	-	-
8급 지방사무실무원		10	9	1	-	-	-	-	-	-
8급 지방조무원		3	3	-	-	-	-	-	-	-

직렬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기능 9 급 소 계	106	34	7	5	35	20	2	3	-
9급 지방통신원	2	1	1	-	-	-	-	-	-
9급 지방전화상담원	3	1	-	-	-	2	-	-	-
9급 지방전기원	5	-	-	-	5	-	-	-	-
9급 지방기계원	23	5	-	-	18	-	-	-	-
9급 지방열관리원	2	-	-	-	2	-	-	-	-
9급 지방선박항해원	1	1	-	-	-	-	-	-	-
9급 지방운전원	32	10	1	4	3	10	1	3	-
9급 지방화공원	2	-	-	-	2	-	-	-	-
9급 지방농림원	1	-	-	1	-	-	-	-	-
9급 지방위생원	1	1	-	-	-	-	-	-	-
9급 지방사무실무원	31	15	5	-	4	6	1	-	-
9급 지방전화상담원 또는 9급 지방사무실무원	2	-	-	-	-	2	-	-	-
9급 지방기계원 또는 9급 지방사무실무원	1	-	-	-	1	-	-	-	-
기능 10 급 소 계	112	18	5	3	39	26	13	8	-
10급 지방전화상담원	1	1	-	-	-	-	-	-	-
10급 지방전기원	3	1	-	-	2	-	-	-	-
10급 지방기계원	2	-	-	-	2	-	-	-	-
10급 지방운전원	29	1	1	1	7	2	9	8	-
10급 지방위생원	1	-	-	-	1	-	-	-	-
10급 지방사무실무원	48	13	4	-	12	16	3	-	-
10급 지방조무원	7	-	-	-	4	2	1	-	-
10급 지방전기원 또는 10급 지방위생원	2	-	-	-	2	-	-	-	-
10급 지방전기원 또는 10급 지방조무원	5	-	-	-	5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열관리원		3	1	-	2	-	-	-	-	-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위생원		2	-	-	-	2	-	-	-	-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조무원		7	1	-	-	2	4	-	-	-
10급 지방사무실무원 또는 10급 지방방호원		2	-	-	-	-	2	-	-	-

고 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삼각점에 대한 세계측지계좌표 성과를 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4월 20일

포항시 복구 고시 제2010-2호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좌표 성과 고시

번 호	기준점 번호	ITRF2000 (m)	GRS80타원체			표고 (m)	소재지	측량일	표지 재질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1	경북 7	X=-3273460,591 Y=3990342,046 Z=3734933,291	위도 36° 04' = 27,7447" 경도 129° 21' = 48,9593" 타원체고=116,130	X 386358,310 Y 232752,754	동부	86.812	경상북도 포항시 복구 창포동 산 38-1	2009. 07. 21	표석
2	경북 12	X= -3267192,429 Y= 3990062,421 Z= 3740878,840	위도 36° 08' = 23,6834" 경도 128° 43' = 04,5740" 타원체고=234,986	X 393614,349 Y 228056,907	동부	205.63 6	경상북도 포항시 복구 홍해읍 양백리 산 54	2009. 07. 21	표석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건축지적과(☎ 053 - 950 - 3464)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제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포항시 남구청장

2010년 04월 일

포항시 남구 고시 제2010-11호

지적측량기준(삼각)점 성과고시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명칭및번호					
경북18	372476.795	237140.498	86.054	129-24-41.9674	35-56-56.8120
투영원점	동부원점				
소재지 및 표지재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168, 표석				
측량연월일	2009.07.21				
측량성과보관장소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건축지적과				
비 고					

공 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 북구청장

2010. 4.19

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 2010 - 104호

도로지정(변경) 공고

- 1. 건명 : 도로의 지정
-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 3. 변경내용 : 합필 및 분할로 인한 지번 및 지정면적 변경
- 4. 도면 : 북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계		61	65.2	0.94	2010.4.19	501 번지 208-2번 지에 합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곡리	208	3	7.2	0.42	“	
“	208-2	58	58	1	“	

문의처 : 건축과(054-240-7474)